

# 안산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90
----------	------

제출년월일 : 2002. . .

제출자 : 안산시장

## □ 제안이유

- 현행 안산시 장학금이 저소득 계층위주의 한정적으로 운영되는바, 공단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근로자 또는 근로자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장학생 선발 및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자의 기술인력 양성을 적극 지원하고자 장학금 지급대상을 확대 조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가. “산업체위탁교육” 및 “기업정보인력”을 용어의 정의에 추가함 (안 제2조).
- 나. 장학금의 지급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함 (안 제10조).
- 다. 장학금 지급액 및 장학금 지급정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안 제12조, 제14조).
- 라. 장학금 지급대상 선발기준 및 장학생 선발 정원 기준을 정비함 (안 별표 1 및 별표 2).

## □ 개정조례안 : 별첨

##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 □ 예산수반사항

- 안산시 출연금 총액 예정 : 2003~2005년까지 100억증액  
(2003년40억, 2004년30억, 2005년30억)

## □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02. 11. 13 ~ 11. 23

## □ 기타 참고 사항 : 해당없음

# 안산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초생활보장대상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말한다.
2. “산업체위탁교육”이라 함은 시관내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시관내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분류에 따른다)에 기능직으로 근무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선발하여 관내 대학에 전문 교육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업정보인력”이라 함은 시관내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시관내 기업체에 6월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시관내 대학의 정보화분야 관련 학과 입학예정자를 말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장학금의 지급대상) ①장학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구체적인 선발기준 및 장학생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1. 애향장학금 : 학부모와 학생이 모두 장학생선발 현재 전년도 1월 1일이전부터 계속하여 시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시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및 시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교) 신입생. 다만, 특수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의 경우 그 소재지가 시관내가 아니라 할지라도 위원회의 결정으로 시관내 고등학교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2. 도울장학금 : 시관내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보장대상자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3. 근로장학금 : 장학생 선발일 현재 시관내 기업체에 1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본인 또는 그 자녀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애향장학금 지급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자
4. 산업체위탁교육장학금 : 산업체위탁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자
5. 기업정보인력장학금 : 기업정보인력중에서 출신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8(부록)

② 제1항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라도 국가·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기로 확정되었거나 받은 자에게는 중복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고등학교 특기장학생은 예외로 한다.

제12조 제1항 중 “저소득도울장학금”을 “도울장학금”으로 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체위탁교육장학금 및 기업정보인력장학금의 개인별 장학금 지급액은 수업료의 50퍼센트 해당액을 졸업시까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 제4호 내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울장학생의 경우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자격이 없어진 경우
5. 산업체위탁교육장학생의 경우 제2조 제2호에 의한 중소기업체에서 퇴사하거나 사무직종으로 전직한 경우
6. 기업정보인력장학생의 경우 제2조 제3호에 의한 기업체에서 퇴사한 경우

별표 1 “안산시 장학금 지급대상 선발기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안산시 장학생 선발 총괄 정원 기준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선정된 장학생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정된 것으로 본다.

소관 실·과		주 민 자 치 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담당·팀장 직위·성명	시정담당 신화용
	담당자 성명·전화	송은선 (행정 3453)

&lt;별표 1&gt;

## 안산시 장학금 지급대상 선발기준(제10조 관련)

구 분	지급 대상	장학생 종 류	선 발 기 준	비 고
애 향 장학금	고등 학 生	일반우수 장 학 생	(우수장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별 입학시험 성적 고득점자 순</li> </ul>	1학년
			(복지장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정형편이 어려워 타의 지원없이는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li> </ul>	1학년
			(특기장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능, 체육기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고 시·도 이상의 대회에서 상위 입상하여 지역의 명예를 높인 자</li> </ul>	전학년
	재학우수 장 학 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년도 학년말 계열별 성적 고득점자 우선순</li> <li>가정형편이 어려워 타의 지원없이는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li> </ul>	2,3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내 기업체 근로자 본인 또는 그 자녀중 전년도 학년말 성적이 학년 전체 50/100 이내로 과세증명 5만원이하 납부자(신입생은 입학시험성적순)</li> </ul>	전학년
	대 학 생	우수장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학능력시험 고득점자 순</li> <li>예·체능계 우수대학 입학자</li> </ul>	1학년
		복지장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정 형편이 어려운 불우학생</li> </ul>	
		근로장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내 기업체 근로자 본인 또는 그 자녀중 대학수학능력평가결과 60%이상 득점자로 과세증명 5만원이하 납부자</li> </ul>	
도 울 장학금	중· 고등 학 生	도 장 학 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고등학교 기초생활보장대상자중 학년성적이 30/100이내인 자</li> </ul>	전학년
산업체 위탁교육 장학금	대 학 생	산업체 위탁교육 장 학 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내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중소기업에 기능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li> <li>학업성적은 우수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운자</li> </ul>	전학년
기업정보 인력 장학금	대 학 생	기업정보 인력 장 학 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내 실업계 고교졸업(예정자)자중 관내 기업체에 6월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li> <li>관내 대학의 정보화분야 관련 학과 입학예정자</li> </ul>	전학년

## &lt;별표 2&gt;

**안산시 장학생 선발 총괄 정원 기준표**(제11조제2항 관련)

장학생의 종류	구 분	비율	장학생 종류	비율	비 고
애 향 장 학 생	고 등 학 생	80%	일반우수장학생	40%	
			재학우수장학생	40%	2,3학년 각20%
			근로장학생	20%	
	대 학 생	20%	우수장학생	60%	
			복지장학생	20%	
			근로장학생	20%	
도 을 장 학 생	중·고등학생	100%	도 을 장 학 생	100%	
산업체위탁교육 장 학 生	대 학 생	100%	산업체위탁교육 장 학 生	100%	
기업정보인력 장 학 生	대 학 생	100%	기업정보인력 장 학 生	100%	

##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말한다.</p>	<p>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초생활보장대상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말한다.</li> <li>“산업체위탁교육”이라 함은 시관내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시관내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분류에 따른다)에 기능직으로 근무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선발하여 관내 대학에 전문 교육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li> <li>“기업정보인력”이라 함은 시관내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시관내 기업체에 6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시관내 대학의 정보화분야 관련 학과 입학예정자를 말한다.</li> </ol>
<p>제10조 (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저소득도울장학금은 안산시 관내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로서 별표 1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p> <p>② 애학장학금은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별표 1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부모와 학생이 장학생선발 연도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계속하여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li> <li>안산시에 소재한 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안산시에 소재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교) 신입생. 다만, 위원회에서 특수교육을 목적으로 한 고등학교로 선정된 경우에는 이를 관내학교로 본다.</li> </ol>	<p>제10조 (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구체적인 선발기준 및 장학생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애학장학금 : 학부모와 학생이 모두 장학생선발 일 현재 전년도 1월 1일부터 계속하여 시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시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및 시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교) 신입생. 다만, 특수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의 경우 그 소재지가 시관내가 아니라 할지라도 위원회의 결정으로 시관내 고등학교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li> <li>도울장학금 : 시관내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보장대상자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li> </ol>

##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③ 제2항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라도 국가·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기로 확정되었거나 받은자에게는 중복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고등학교 특기장학생은 예외로 한다.</p>	<p>3. 근로장학금 : 장학생 선발일 현재 시관내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본인 또는 그 자녀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애함장학금 지급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자</p> <p>4. 산업체위탁교육장학금 : 산업체위탁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자</p> <p>5. 기업정보인력장학금 : 기업정보인력증에서 출신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p> <p>② 제1항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라도 국가·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기로 확정되었거나 받은 자에게는 중복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고등학교 특기장학생은 예외로 한다.</p>
<p>제12조 (장학금 지급액) ① 저소득도을장학금의 연간 개인별 장학금 지급액은 기성회비(육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p> <p>② (생략)  <u>〈신설〉</u></p>	<p>제12조 (장학금 지급액) ① 도울장학금 -----  -----  -----</p> <p>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체위탁교육장학금 및 기업정보인력장학금의 개인별 장학금 지급액은 수업료의 50퍼센트 해당액을 졸업시까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p>
<p>제14조 (지급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지급을 정지한다.</p> <p>1. ~ 3.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p>	<p>제14조 (지급정지) -----  -----  -----</p> <p>1. ~ 3. (현행과 같음)  4. 도울장학생의 경우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자격이 없어진 경우  5. 산업체위탁교육장학생의 경우 제2조제2호에 의한 중소기업체에서 퇴사하거나 사무직종으로 전직한 경우  6. 기업정보인력장학생의 경우 제2조제3호에 의한 기업체에서 퇴사한 경우</p>